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나271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이진영

변 론 종 결 2023. 7. 14.

판 결 선 고 2023. 8. 25.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0가단113779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9. 3. 접수 제1342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하고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7. 8. 16. 원고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원고와 보증원금 1,500만 원, 보증기한 2021. 8.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보증약정상의 채무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③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7. 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9. 8. 30. C은행에 12,495,915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부터 원고와 물티슈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티슈를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7년경부터 키르키스탄 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수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한 대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8. 5. 이후 원고에 대한 물품공급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보증사고발생전인 2018. 8. 31.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9. 3. 접수 제1342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감정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8. 16. 기준 감정가는 575,438,600원이다. 사. 원고는 2021. 3. 29. 서울회생법원 2021간회단10001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 4. 26. 15:30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지만 2021. 12. 2. 폐지되었다. 한편 위 절차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원고의 2021. 4. 26. 기준 자산 총계는 749,056,403원이고, 부채 총계는 1,126,245,514원이다.

아. 제1심법원이 실시한 감정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8. 31. 기준 시가는 531,841,580원이고, 2022. 2. 8. 기준 시가는 846,807,220원이다.

자. 원고는 제1심 계속중이던 2022. 2. 18. 서울회생법원 2022개회1018798호로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제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2. 5. 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주식회사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인권 행사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은 “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라고 정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채권자인 C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2019. 8. 30.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피고가 2018. 5.경부터는 원고와 거래를 중단하는 등 원고의 경영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까운 장래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불과 8개월가량 경과한 2019. 5. 17. 원고의 C은행에 대한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채권자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본소), 47113(병합), 47120(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여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 3)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장기간에 걸쳐 물품공급거래를 하다가 원고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직전에 원고와 거래를 중단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신호, 판사 오덕식, 판사 조규설

[별지]

부동산 목록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116㎡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2층 단독주택

1층 53.19㎡

2층 53.19㎡

지층 60.14㎡

지층 주택 47.08㎡

대피소 12.96㎡

